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정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41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유정희, 김경영, 이광성, 김정환,
최정순, 김기덕, 김광수, 송아량,
송정빈, 이동현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건설기계를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에 포함시킨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개정에 맞춰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명령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
- 또한, 2020년 4월 3일자로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폐지되고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령명 및 근거조항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노후 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함(안 제15조2 신설)
- 나.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을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소유자로 확대하도록 규정함(안 제16조)
- 다.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함(안 제17조)

- 라. 조기폐차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)
- 마.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폐지 및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
(안 제2조, 제3조, 제15조, 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60조 또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”를 “제60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정한 이외의 사항”을 “정하지 아니한 사항”으로 하고, “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5조 본문 중 “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호”를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의 종류)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(이하 “의무대상 건설기계”라 한다)로 한다.

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

2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
3.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

제16조 중 “소유자”를 “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소유자”를 “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”을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”으로 하고, “자동차에”를 “자동차 및 건설기계에”로 하며, 제2호 중 “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”을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저공해 조치"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 또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를 말한다.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제60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적용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·보급,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 권고,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나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3조(적용) ----- ----- ----- -----정하지 아니한 사항----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)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(이하 "의무대상 자동차"라 한다)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~2. (생략)</p>	<p>제15조(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) -- ----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1호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

〈신설〉

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 다만,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1. ~ 2. (생략)

제17조(저공해 조치 기간) ①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(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의 종류)

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건설기계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(이하 “의무대상 건설기계”라 한다)로 한다.

- 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
- 2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
- 3. 그 밖에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기계

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-----
-----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-----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저공해 조치 기간) ① -----
-----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-----
-----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을 1년(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)까지 유예(재유예)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.

제19조(재정적 지원) ① ----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 -----
-----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-----
-----.

② ----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-----
-----.